

2026년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공고

대전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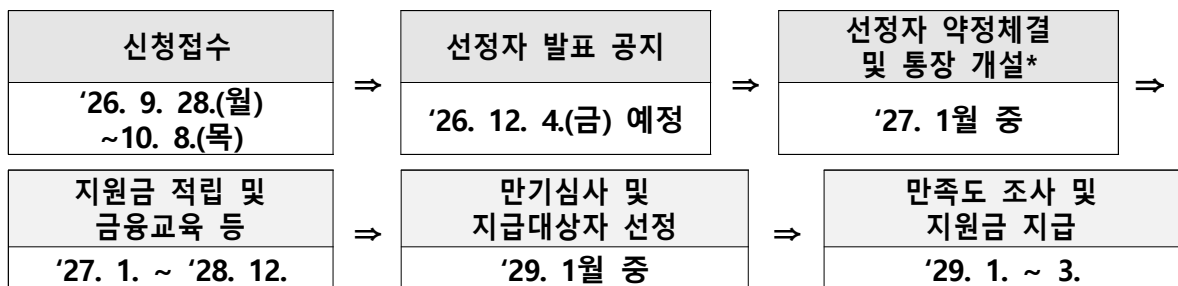
대전광역시장

1. 사업개요

- 사업안내: 지역 업체에 종사하고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근로청년이 매월 15만원씩 2년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시 지원금을 매칭 적립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전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함.

☞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 대출금 상환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

- 사업명: 2026년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6. 9. 28.(월) 10:00 ~ 10. 8.(목) 18:00
- 추진일정 안내



* 적립기간: 통장개설월('27.1월 예상)부터 24개월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구분	월저축	저축기간	본인 저축액	시 지급액	총 수령액	비고
단일형	15만원	24개월	360만원	360만원	720만원+이자	

* 이자율은 '27년 본인 적립금: 2.8% 내외 예상되며 주관은행(하나은행)과 협의결정

2. 신청자격

○ 아래의 자격조건(①~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공고일('26. 9. 22.)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해당연도)

* 주민등록상 1986. 1. 1. ~ 2008. 12. 31. 출생

② 공고일('26. 9. 22.)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자

* 주민등록상 2026. 9. 21.까지 전입완료(외국인 신청 불가)

③ 공고일('26. 9. 22.) 기준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하는 자(유형교차불가)

㉠ 임금근로자: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최소 2026. 6. 22.부터 연속하여 근로 중인 자)

㉡ 사업소득자: 대전시에서 3개월 이상 경과 사업 운영 하는 해당 사업장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최소 2026. 6. 22.부터 연속하여 근로 중인 자)

㉢ 근로계약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이 되어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최소 2026. 6. 22.부터 연속하여 근로 중인 자)

* 법인·단체와 계약을 맺고 주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자유 계약직을 말함

※ 육아휴직자는 휴직 증빙서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소득 증빙자료는 휴직 직전 납부 이력이 있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④ 공고일('26. 9. 22.)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일 경우 1가구 내 2명 이상 신청 가능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금액, 단위: 원/월)

구분	가구원수	월 소득금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3,078,000	110,969	32,899	-
	2인	5,040,000	183,365	123,644	185,675
	3인	6,431,000	232,890	168,649	236,378
	4인	7,794,000	284,951	233,292	290,169
	5인	9,069,000	327,091	284,606	337,647
	6인	10,268,000	374,300	338,641	390,974
	7인	11,419,000	432,308	404,529	457,613

○ 신청제외자(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 ①-1.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I, 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등
- ①-2. (지 자 체)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부산 청년 기쁨두배통장, 인천 드림for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광주 청년13(일+삶)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통장, 전남 청년희망디딤돌통장 등
 - ※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가자 중 중도 해지되어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 단, 보건복지부 이동교육목적인 디딤씨앗통장(취약이동 사회진출 지원) 참여가구나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은 중복가입가능
- ② 미래두배 청년통장(前 대전청년희망통장) 참여자 및 기 수혜자
 - ☞ 용어설명: 참여자(현재 사업에 참여중인 자), 기 수혜자(만기 지급된 자)
 - ☞ 중도탈락(포기)자는 접수가능하나 후순위임
-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정 제외), 신용 유의자
 - ☞ 선정이후 통장 압류자의 경우 중도해지 됨
- ④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 선정 된 후 군복무를 위하여 입대하는 경우 중도해지 됨
- ⑤ 기타 사치.유혹.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행법」 등 관련법의 규제대상 업종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 ⑥ 신청자 본인명의로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3. 신청방법

- 모집인원 : 1,500명(예비자 없음)
- 신청방법 : 대전청년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 ※ 홈페이지(<https://www.daejeonyouthportal.kr>) 접속(본인인증 후 신청) / 대면, 이메일, 우편접수 등 불가
- 신청기간 : 2026. 9. 28.(월) 10:00 ~ 10. 8.(목) 18:00
 - ※ 신청기간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선착순 심사가 아님
-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9. 22.) 이후 발급 자료만 인정)

- ※ 제출 서류의 미비, 누락 등으로 식별 불가시 선발제외되므로 유의
(작성 및 제출서류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 암호(보안) 해제 후 제출 필수, 제출 후 수정 불가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제출

【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 필요서류 】

- ① 미래두배 청년통장 참여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③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5년 이내의 내용표시 되도록 발급)
- ④ 주민등록등본 1부(2인 가구 이상만 제출)
- ⑤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관련 확인서 각 1부씩
 -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6년 6,7,8월 총 3개월분 발급)
- ⑥ 근로 확인 서류 (㉠~㉣ 중, 해당하는 근로 형태별로 제출)
 - ㉠ 임금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미가입 시 연금보험 가입내역서 추가 제출
 - 재직증명서**(회사주소(대전) 기재 및 회사 직인 필수) 또는 표준근로계약서**
 - ** 주30시간 이상 근로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근무사실확인서 반드시 작성제출(붙임)
 - 단,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로자는 재직증명서 제출
 - ㉡ 사업소득자(사업소득자는 최근 3개월 이내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증빙자료(최근 3개월분)*
 -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또는 신용카드매출내역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 국세청 발급 서류에 한함
 - ㉢ 근로계약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근무시간 및 기간표시, 회사 주소(대전) 및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직인 필수)
 - * 주30시간 이상 근로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근무사실확인서 반드시 작성제출(붙임)

※ 서류 검토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주소(주민등록초본), ②사업장 주소(근로계약서), ③주30시간이상 근로(근무사실확인서등) 모두 만족해야하며, 사업 종료시까지 근로관계 등의 조건을 유지하여야 함

4. 선정 기준

○ 선정인원 최종선발은 선정기준*에 의거 순위대로 선정

- 선정인원 : 1,500명
- 선정기준 : 소득(64%)+거주(18%)+연령(18%)=100%

* 동점자일경우 : 소득 낮은 순 → 거주 기간 오래된 순 → 연령 높은 순

* 신청 자격이 적합하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5. 최종 선정자 선정 통보

- **최종 선정자 발표: 2026. 12. 4.(금) 예정**(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대전청년포털 홈페이지(<https://www.daejeonyouthportal.kr>)에서 선정자 발표
 - ※ 선정 대상자로 결정되면 통장 개설을 위해 반드시 하나은행에 방문하여야 함
 - ※ 선정결과는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요망(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약정체결 기간 내 연락 두절, 부재 등으로 약정 미체결 시 약정 포기로 간주하며,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됨)

※ 자격유지 조건(위반시 중도해지 사유임)

- ▶ 참여자는 매월 15만원씩 24개월(2년) 납부
- ▶ 공고일부터 적금 만기(2년)시까지 주민등록 주소 대전광역시 계속 유지
- ▶ 공고일부터 적금 만기(2년)까지 사업장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지
- ▶ 연1회 금융교육 실시와 거주.근로유지를 위한 자료 제출((재)대전청년내일재단)
- ▶ 중간심사 또는 만기심사 시 해지사유 등 발생 시 즉시 (재)대전청년내일재단에 별도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6. 미래두배 청년통장 운영

☐ 통장개설 및 저축

- **(계좌개설)** 주관은행에 참여자 저축계좌와 입출금계좌 별도 개설
 - 대상자로 선정되면 하나은행에 직접 방문 후 가입자 명의로 통장 개설
 -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 해지, 담보제공 등의 권한 행사할 수 없음
 - ※ 통장개설 기간에 신규 대출이나 대출 연장 시 통장개설이 불가함
- **(저축방법)** 매월 25일까지, 참여자 저축 계좌로 **자동이체** 원칙
 - ※ 자동이체 등록은 본인만 가능
- 가입기간 중에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중위소득 120%를 초과해도 통장은 유지되며 계속 적립 가능

☐ 선정자 금융교육 실시 : 참여기간 동안 연 1회 금융교육(온라인) 실시

- 가입기간 중 중간점검 실시(①참여자 주소, ②사업장 소재지, ③주30시간 이상 근로 유지)

☐ 시비 지원금 지급 : 저축액 기준 1:1 매칭, 만기 시 일괄 지급

- ☐ 지원금 지급조건 및 유지의무: 근로유지 18개월, 납입 16회 이상
- 실적(주 30시간 미만 근로 포함), 폐업,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라도 근로관계 유지 및 저축 납입이 미달할 경우 중도해지될 수 있음
 - ※ (근로) 근로유지 기간이 18개월 이상이어야 사업지원 대상이 유지되며,
 - ※ 또한 (납입) 납입횟수가 16회 이상이어야 사업지원 대상이 유지됨 / 두가지 모두 만족해야함 (중간심사 및 만기심사 시에 증빙서류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선정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미래두배 청년통장 해지사유 및 지급액

구분	해지 사유	지급액	비고
만기해지	■ 2년 만기까지 통장 유지	본인저축액 시 지원금 약정 이자	심사 미통과 시 본인저축액, 약정이자만 지급
중도해지 (시지원금 미지급)	< 사업목적을 어긴 경우 > ■ 대전광역시가 아닌 타·시도로 직장, 거주지 옮긴 경우(근무지 변경* 포함) ※ 직장내부사정이동하는 경우 포함 ■ 사업자가 대전광역시가 아닌 타·시도로 사업장을 옮긴 경우 ■ 군 입대로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 < 중복참여 또는 범죄에 관련된 경우 > ■ 허위, 부정 등의 방법으로 선정 또는 타 자산형성 사업의 수혜내역이 드러난 경우 ■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 < 약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 ■ (근로) 근로기간이 총18개월이 안 되는 경우 ■ (납입) 납입횟수가 총16회가 안 되는 경우 ■ 사업종료 시 근로기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증빙서류 미제출 포함) ■ 근로 및 거주 등 각종 증빙서류 미제출 ■ 시와 재단의 자료 제출 및 교육수료 등 정당한 요구 불응 < 기타 > ■ 통장에 압류가 등록된 경우 ■ 참여자 본인이 해지 희망	본인저축액 약정 이자	
특별해지 (시지원금 일부지급)	■ 참여자 사망	본인저축액 시 지원금 약정 이자	사유발생 시점까지의 적립액

□ 기타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또는 타 자산형성 사업에 참여 및 수혜자일 경우 등 자격제한 조건임에도 선정된 경우에는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약정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보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이후에도 계속하여 신청 자격(대전 거주 및 근로 조건)을 유지하여야 미래두배 청년통장 가입 유지가 가능합니다.
※ 기업의 사정으로 근로사업장이 변경되어도 해지사유에 해당 / ①주소, ②사업장 소재지, ③주30시간이상 근로유지
- 대상자 선정 후, 통장 유지 기간 동안 타 시·도로 근무지 또는 주민등록을 이전 할 경우 중도해지 될 수 있으며, 근로 및 주소 확인을 위해 사후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융교육 미수료자, 근로 및 주소 심사 등의 증빙자료 미제출은 물론 근로기간 확인 불가능한 경우 해지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합니다.
- 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사업에 대한 참여 예정이신 분들은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 문의사항

- 대전청년내일재단 미래두배 청년통장
☎ 042-719-8170 / 8171 / 8172 / 8173 / 8174 / 8329 / 8432 / 8435
-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 042-270-0831 (일반사항)

붙임

2026년 미래두배 청년통장 [* 임금근로자 및 근로계약근로자 필독]

근무사실 확인서 양식

(* 주30시간 이상 근로 확인용) (고용주 발급)

※ 주30시간 이상 근로 증빙이 안 되는 신청자는 반드시 제출

근무사실 확인서(임금근로 또는 근로계약 근로자용)				
피고용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고용성격 (피고용자업무기재)			
고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무장소				
임금지급형태		☐ 일당제(금액 원) ☐ 월급제(금액 원) ☐ 연봉제(금액 원)		
근로시간 (휴일: 미근무시간)		일시간 오전 : ~ : (시간) 일시간 오후 : ~ : (시간) ☒ 주근로일수: 총 00 일 / ☒ 주근로시간: 총 00 시간		
사회보험적용여부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해당부분 모두체크)		
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사업장명 : 사업장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사업주명 : (직인날인)				
※ 표준근로계약서 준용하여 작성함 / 작성방법 : 고용주가 작성, 고용성격 : 업무내용 구체적 기재 ○ 전화번호는 피고용자가 아닌 고용주 또는 인사 담당자 연락처 기재(고용확인용) ○ 사업주의 직인(도장) 필수 ※ 자필 서명 인정 불가(기한 내 보완되지 않을 시 심사 제외) ○ 허위(위조) 작성으로 판명될 경우 이와 관련된 법적 책임은 본인(신청인)에게 있으며, 신청 무효 처리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참 고

2026년 미래두배 청년통장 제출 서류 발급처

※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모든 서류는 공고일(9.22.) 이후 발급 자료만 인정합니다.

※ 반드시 암호해제 후 제출, 여러 장일 경우 모두 제출. (압축 파일, 공고양식 및 PDF 원칙)

제출서류	비고	발급처
① 참여 신청서		○ 대전청년포털 홈페이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대전청년포털 홈페이지
③ 주민등록초본(필수)	※ 최근 5년 이내 주소 변동내역 모두 포함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시	○ 동 행정복지센터 ○ 무인발급기 ○ 정부24(www.gov.kr)
④ 주민등록등본(선택)	※ 2인 가구 이상만 제출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시 ※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모두 표시	○ 동 행정복지센터 ○ 무인발급기 ○ 정부24(www.gov.kr)
⑤ 건강보험료 관련 확인서		
⑦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필수)	· 본인 기준 전체 이력	○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 납부확인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④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필수)	· 건강보험료 납부자(본인) 기준	
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필수)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분) (26년 6, 7, 8월분)	· 건강보험료 납부자(본인) 기준 (실제 납부금액과 무관하며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함) ※ 육아휴직자는 휴직 직전 납부 이력 있는 최근 3개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연말정산 등으로 건보료가 과다(과소) 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개인별 상세내역 조회 화면 납부확인서와 병합하여 제출(미제출 시 납부금액으로 산출)	
⑥ 근로 확인 서류(해당 근로형태)	· 기재된 종류의 서류만 인정됨	
⑦ 임금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1)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필수)	※ 고용보험 가입내역이 없는 경우 연금보험 가입내역서 추가 제출 ※ 최근 3개월 이내 직장을 옮긴 경우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추가 제출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고용산재토달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2) 근로증빙자료(택1)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또는 근무사실확인서(붙임) (필수)	※ 사업장 주소(대전), 근무기간 근로시간(주 30시간 이상), 회사 직인을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함 ※ 2개 이상 서류로 확인이 가능할시 병합하여 제출(공공기관은 재직증명서로 가름) ※ 근무사실확인서는 반드시 붙임 양식으로 작성	○ 재직증명서 -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발급
④ 사업소득자	최근 3개월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1) 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		○ 홈택스(www.hometax.go.kr) * (대표번호) 126
(2) 최근 3개월 소득증빙자료(택1) 홈택스에서 정식 발급된 현금영수증매출내역 또는 신용카드매출자료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필수)	※ 26년 6, 7, 8월분 ※ 최근 3개월간 한 건 이상의 매출내역 필수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식 발급된 소득증빙자료만 인정되며, 요구 양식 외의 서류 인정불가 ※ 사업자번호가 확인되는 화면 캡처본 제출	○ 홈택스(www.hometax.go.kr) * (대표번호) 126
④ 근로 계약근로자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주30시간 이상 근로자	
(1) 근로증빙자료(택1)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위촉)계약서 또는 근무사실확인서(붙임) (필수)	※ 사업장 주소(대전), 근무기간 근로시간(주 30시간 이상), 사업자번호, 대표자 직인 필수 ※ 근무사실확인서의 경우 붙임 양식 외에 다른 양식은 인정되지 않음	○ 재직 중인 사업장